

창원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가단1104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20. 6.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8.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34.9%로 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5. 2. 16. 소외 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3. 15.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5가소497442호), 위 법원은 2016. 3. 16. ‘C는 원고에게 19,631,865원과 그중 11,865,815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9. 1. 1.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2019. 1. 1. 무렵부터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에 114,58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망 E(2019. 7.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F, G가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6. 1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20.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법원행정처, H단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114,589,000원 상당의 채무와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시부모 공양, 자녀 양육, 망인 간병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이고, 피고가 C의 자녀이자 피고의 외손인 I의 양육비와 망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 중 C의 부담분을 대신 지출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르게 된 것일 뿐 C의 구체적인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망인과 1975경 혼인신고를 하고, 1969년 F를, 1974년 C를, 1977년 G를 각 출산한 사실, 피고는 1996. 1. 16.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김해시 J에 거주하여 왔고,

현재 위 주소지에서 I(K생)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 망인의 치료비와 장례비가 다소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와 C는 모녀관계인 점,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피고의 법정상속지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C가 피고에 대하여 I의 양육비, 망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 중 C의 부담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협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명

